

'99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9년 공유재산관리(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①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99년 공유재산관리(3차 변경) 계획안의, 취득재산은 '향토메밀자료관-효석기념관' 건립부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창동리 산176-3번지 외7필지 27,452㎡ 토지매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봉평면노인복지회관 1동/ 355㎡ 건물신축이며,

당초 99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던 재산중, 도암면 농산물판매장 부지(횡계리 355-41번지 207㎡, 의종개발 소유)는 매매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였고, 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승인받았던 횡계리 324-1 대 739㎡(구농촌지도소북부지소)는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99년 취득처분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발췌)

-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총괄표 (7 - 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억, 천원)

구분			합계			당초			3차 변경 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7	66,909	225,700	7	39,664	306,611	0	27,245	△ 80,911
		건물	2	709	810,000	1	354	400,000	1	355	410,000
		기타									
	1) 매입	토지	7	66,909	225,700	7	39,664	306,611	0	27,245	△ 80,911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2	709	810,000	1	354	400,000	1	355	410,000	
	기타										
처분	합계	토지	11	1,345	71,786	12	2,084	156,032	△ 1	△ 739	△ 84,246
		건물	2	138	1,460	2	260	10,622	0	△ 122	△ 9,162
		기타									
	1) 매각	토지	11	1,345	71,786	12	2,084	156,032	△ 1	△ 739	△ 84,246
		건물	2	138	1,460	2	260	10,622	0	△ 122	△ 9,162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대부	토지										
	건물										
	기타										

취득처분 제외(감소)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당초 목적	제외 사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취득	대	횡계 335-41	207	102,672	농산물판매장 신축 (도양면 청사 앞)	소유자가 매각거부 (감정가격 낮음) *청사부지에 신축중
처분	대	횡계 324-1	739	84,246	대체재산조성 (판매장 부지 매입)	-대체재산 매입못함 -감정가격 낮음 -피로연장 신축필요
	철.콘.	·	69.4	6,732		
	시.벽.	·	52.8	2,430		

* 농산물판매장 부지매입 불가능 사유: 소유자(주)의종개밭이 90년 평당 2,000천원
매입하였으므로 평당 3,000천원 요구 (감정단가는 평당1,820 천원임)

관 계 법 규 (발 취)

지 방 재 정 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①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②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 (시군의 경우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 --- 취득의 경우(1,000㎡ 이상) --- 처분의 경우(1,000㎡ 이상)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99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않은 유휴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5. 재산의 처분기준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수 있다.